

동두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 - 398
----------	---------

제출년월일 : 2002. 4

제출자 : 동두천시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현실에 맞지 않는 특별회계 운용관계를 현실에 맞게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제명을 “동두천시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로 개정
나.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융자대상을 정함(안 제5조)
- 라. 융자금액을 정함(안제6조)
- 마. 융자신청절차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 바. 융자금의 상환 및 감면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 8조 및 제9조)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두천시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하 "자금융자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융자사업) 자금 융자사업이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융자금 회수금
3. 융자금의 회수이자수입금
4. 기타수입금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융자금
2. 자금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제5조 (융자대상) ①자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1. 자활을 위한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 한다.

제6조 (융자금액등) ①융자금은 1세대당 5,000,000원 이내로 하며, 3년거치 4년균등상환으로 한다.

②융자금의 이자는 년 5%로 하되,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년 15%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절차) ①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융자금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 ①시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시장은 이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 할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를 받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융자금을 사용한 때
2.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제9조(감면조치)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자와 보증인이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이자의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는 동두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조성된 자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동두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사회담당”을 “사회복지담당”으로 한다.

②동두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담당”을 “사회복지담당”으로 한다.